
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8. 20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8. 20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99. 8. 2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로과장 전영표)

가. 제안이유

○ 도로법 제80조의2의 “부당이득금” → “변상금”으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“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” → “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” 징수할 수 있다고 법개정(99. 2. 8)에 따른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중 “부당이득금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“변상금”으로 부분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중 “부당이득금” → “변상금”으로 개정(안 제2조 내지 제1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도로법 제80조의2의 “부당이득금”의 용어를 “변상금”으로 개정코자 하는데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?	○ “변상금”은 부당이득금에 범칙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임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09호
의결년월일	99. 8. 27 (제72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8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도로법 제80조의2의 “부당이득금” → “변상금”으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“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” → “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” 징수할 수 있다로 법개정(99. 2. 8)에 따른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중 “부당이득금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“변상금”으로 부분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중 “부당이득금” → “변상금”으로 개정(안 제2조 내지 제11조)

부천시조례 호
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**변상금**”으로 한다.

(이하 문안 생략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	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
제2조(점용료 및 <u>부당이득금</u> 의 부과대상)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, <u>부당이득금</u> 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.	제2조(점용료 및 <u>변상금</u> 의 부과대상)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(생략) ② <u>부당이득금</u> 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.	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변상금</u>
제4조(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<u>부당이득금</u> 의 산정액이 5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제4조(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) ①.....

현행	개정안
<p>②(생략)</p> <p>제5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(생략)</p> <p>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점용료 등의 조정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변상금.....</p>
<p>제6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~③(생략)</p> <p>④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·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제6조(점용료 등의 감면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변상금.....</p>
<p>제7조(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(생략)</p> <p>②점용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1~2(생략)</p> <p>3.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·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변상금.....</p> <p>③.....</p>
<p>제8조(점용료 등의 강제징수)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	<p>제8조(점용료 등의 강제징수) 변상금.....</p>
<p>제9조(수수료의 징수) ①~②(생략)</p>	<p>제9조(수수료의 징수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징수의 위임)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는 부천시사의구및동위임조례에 의한다.</p>	<p>제10조(징수의 위임) 변상금.....</p>
<p>제11조(이의신청) 점용료·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(이의신청) 점용료·변상금.....</p>